

■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별표] <개정 2021. 12. 20.>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1조관련)

순번	발령구분		구 비 서 류	비 고
1.	신규채용		인사기록출력물 1통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 따른 임용 결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서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이 행한 결정사유조회보서,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이 발행한 범죄경력조회보서 등을 말한다.
			임용 결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1통	병역준비역 및 실역미필 보충역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통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경력증명서 1통	
			채용신체검사서 1통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 발행
			신원조사회보서 1통 신원진술서 2통 기본증명서 1통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진(반명합판) 1매	
2.	승진	일반승진	인사기록출력물 1통 일반승진시험합격통지서 1통	
		기타승진	승진순위표 1통	
3.	전 직		인사기록출력물 1통	
			전직시험합격통지서 1통	
4.	면직	의원면직	사직원서(자필) 1통	
		직권면직	징계위원회동의서·진단서·직권면직 사유설명서 또는 직권면직사유를 증빙할 서류 1통	
		당연퇴직	판결문 사본 1통	
5	강 임		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개폐나 예산 감소의 관계서류 1통	
6	징 계		징계의결서 사본 1통	
7	추 서		공적조사서 1통	
			사망진단서 1통	
			사망경위서 1통	
8	휴직 및 복직		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 1통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 발행 현역증서 사본·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1통 휴직사유를 증빙할 만한 서류
			현역증서 사본·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1통 휴직사유를 증빙할 만한 서류	
9	전 출 입		전출입동의서 1통	
10	직 위 해 제		직위해제사유서 1통	
11	시 보 임 용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 1통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